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5년 8월 30일(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5년 8월 31일

다. 상정일자 : 2005년 9월 6일(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기획관리국장 신강탁)

#### 가. 제안이유

-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안 제1조)

- 제7조제1항중 “1일에 80,000원”를 “1일에 110,000원”로 하고  
(안 제7조)
-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임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회)

-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위원 회기수당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 및 확보대책,
  -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효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가. 수정이유

-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규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시의 적절하게 정비하는 것이나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소급적용의 내용을 삭제함

#### 나. 주요내용

- 개정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함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5년 9월 6일

제 안 자 : 김 문 천 의원 외

## **□ 제안이유**

-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규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시의 적절하게 정비하는 것이나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소급적용의 내용을 삭제함

## **□ 주요내용**

- 개정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함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5일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 조 문 대 비 章 文 大 碑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항중 “1일에 80,000원” 을 “1일에 110,000원”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관 계 법령 발 췌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2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본다.<개정 2001.1.29>

### □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1999. 8. 31, 2003. 7. 18>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
-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 12. 30, 2003. 12. 18, 2005. 4. 27>

[별표 6] <개정 2005. 8. 5>

###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제15조 관련)

구 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
시 · 도의회 의원	일 110,000원 이내	별표 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 ·숙박비 및 식비(3분의 1)의 범위이내
시 · 군 · 자치구의회 의원	일 100,000원 이내	